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3. 6.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19. 2. 22.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9. 2. 25.
- 다. 상정일자 : 제22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19. 3. 6.)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가. 제안이유

긴급 주거위기가구의 주거안정 및 주거취약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지원하는 마포형 주거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2)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조성 및 용도, 운용관리(안 제3조~제7조)
- 3)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안 제8조~제9조)
- 4) 마포하우징사업 지원대상, 신청절차, 대상자 선정(안 제10조~제12조)
- 5) 용자지원한도 및 이율, 용자금의 상환 등(안 제13조~제14조)
- 6) 임시거소 입주기간 및 용자금의 상환기한 연장(안 제15조)

- 7) 용자계약해지 및 용자금의 반환회수(안 제16조~제17조)
- 8)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안 제18조~제20조)

3. 검토보고 (최종익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주거기본법」, 「긴급복지지원법」,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득수준 등에 따른 주거복지 수요에 대비하고 저소득 주거취약 주민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조성을 통한 긴급주거지원이나 입주에 필요한 주거안정자금 용자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동 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서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까지는 기금의 조성 재원과 용도, 그리고 운용관리와 존속기한을 규정하였으며, 기금의 재원조성 계획은 종전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라 적립된 기금 34억 2,440만원 이입조치와 일반회계 연도별 출연금, 기타 이자수입 등으로 4년간 총 94억원의 재원 <표 1>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표 1> 연도별 재원조달 방안

		(단위: 억원)				
구분	연도	2019	2020	2021	2022	합계
	세입	기금	34	19	20	21
세입 재원 내역		종전 기금 이입 조치	일반회계 출연금	일반회계 출연금	일반회계 출연금	

- 또한, 안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와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에서의 경우,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위원장 1명 포함 5명 이상 7명 이하, 임기 3년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도록 정하였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아울러, 안 제10조(마포하우징사업 지원대상)에서 제12조(마포하우징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의 경우, 임시거소,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지원과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등 마포하우징사업 지원대상과 지원대상자 선정, 그리고 신청처리 절차를 정하고자 하였으며, 참고로 2018.12.31.기준 마포하우징사업 지원대상자 현황 <표 2> 은 8,773가구로 마포구 172,505세대의 약 5.0%에 해당됨.

<표 2> 마포구 마포하우징사업 사업별 지원대상

(단위: 가구, 2018.12월 기준)

계	주거안정자금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매입임대주택 (저소득 주거취약가구)	임시거소 (긴급 주거위기가구)
8,773 (비율, 100%)	420 (4.8%)	8,353 (95.2%)	수시

※ <표 2> 의 세부내용은 별첨(최근 3년간 증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현황 포함)

- 이어서, 안 제13조(용자·지원한도 및 이율 등)에서 제17조(용자금의 회수)의 경우, 구청장은 용자금의 지원 및 상환과 임시거소 입주기간, 그리고 용자계약해지 조건에 따른 용자금반환 및 회수 방법 등 용자금 지원과 관리에 대하여 정하고자 하였음. [〈표 3〉 조별 주요내용]

〈표 3〉 용자금의 지원·상환·연장·반환·회수의 주요내용

구 분	조별 주요내용	비고
용자지원한도 및 이율 등	-입주보증금 : 가구당 1천만원 이하, 대부이율 연 2퍼센트 이내 -주거안정자금 : 가구당 1백만원 이하	
용자금의 상환 등	-상환방법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기간 경과 시 채권확보 조치
입주기간 및 용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임시거소 입주기간 : 6개월 이내 -상환기한 연장 : 천재지변 등 1차례 연장 -매입임대주택 임대차 계약기간 : 2년	재계약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함
용자계약해지 및 용자금의 반환	-임대기간 만료 -임대기간 중 타 시군구 전출 -공공임대주택 입주 포기 가구	
용자금의 회수	-회수사유 발생 : 즉시 회수 -명부관리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통보로 보증금 회수에 만전	협의 시행

- 또한, 안 제1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서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 제3조(경과조치 등)의 경우, 이 조례 시행일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안 제8조 및 제9조의 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종전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는 폐지하고 경과조치로 종전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이 조례 기금으로 이입 조치하도록 정하였음.

4. 종합의견

- 본 제정안은 총 20조 부칙 3조로 구성되어 마포구 저소득 주거취약 주민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주거기본법」, 「긴급복지지원법」,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하여 긴급 주거위기가구 및 저소득 주거취약가구 주민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지원 및 융자금 지원과 임시거소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므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20년부터 3년에 걸쳐 매년 평균 20억 원씩, 총 60억원의 일반회계 출연금을 통한 기금의 재원이 조성됨으로써 구 재정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기금의 정기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세외수입 등의 분석을 통한 종합적인 검토·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 없음